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제100차 이사회 의사록

회의 소집 통보일자	2018년 10월 10일
이사정수	15
재적이사	15

1. 일시 : 2018년 10월 18일(목) 14:00 -16:00

2. 장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3. 참석

구 분	인원	성 명	비고
참석이사	12	김영춘, 이계엽, 김진수, 김풍기, 이한규, 정재천, 방두성, 송희연, 이봉춘, 조창희, 성찬용, 장대진	
불참이사	3	전종윤, 최방길, 홍승기	

4. 보고사항

- 제1호 전 회의록 결과보고
- 제2호 학교법인 주요업무보고
- 제3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

5. 의결안건

- 제1호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- 제2호 2019학년도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- 제3호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- 제4호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- 제5호 금강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(안)
- 제6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개정(안)

방두성 방 두성	송희연 송희연	인원무 인원무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6. 회의내용(회의록 별첨)

- 의결내용

별첨의 회의록 요지 내용과 같이 의결하다.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8년 10월 18일

이 사 장	김영춘 <i>김영춘</i>		
이 사	전종윤	이 사	송희연 <i>송희연</i>
이 사	이계엽 <i>이계엽</i>	이 사	홍승기
이 사	김진수 <i>김진수</i>	이 사	이봉춘 <i>이봉춘</i>
이 사	김풍기 <i>김풍기</i>	이 사	조창희 <i>조창희</i>
이 사	이한규 <i>이한규</i>	이 사	최방길
이 사	정재천 <i>정재천</i>	이 사	성찬용 <i>성찬용</i>
이 사	방두성 <i>방두성</i>	이 사	장대진 <i>장대진</i>
		감 사	인형무 <i>인형무</i>
		감 사	이대호

위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확인 함.

2018년 10월 18일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

[제100차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요지]

1. 일 시 : 2018년 10월 18일(목) 14:00-16:00

2. 장 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3. 참 석 : <참석이사> 12명

김영춘, 이계엽, 김진수, 김풍기, 이한규,
정재천, 방두성, 송희연, 이봉춘, 조창희,
성찬용, 장대진

<참석감사> 1명 인형무

<불참이사> 3명 전종윤, 최방길, 홍승기

<불참감사> 1명 이대호

<참석 교직원 및 보고인> 7명

정응화 법인사무처장, 유익종 법인사무부처장, 최재근 법인총무국장
신동호 교학지원부처장, 김형래 2025추진본부장,
법인직원(박연석), 학교직원(권정만)

이사정수 15명 중 12명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므로 본 법인 정관
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
제100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.

4. 보고사항

- 제1호 전 회의록 결과보고
- 제2호 학교법인 주요업무보고
- 제3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

5. 의결안건

- 제1호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- 제2호 2019학년도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- 제3호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- 제4호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- 제5호 금강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(안)
- 제6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개정(안)

방두성	방두성	송희연	송희연	인형무	인형무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6. 회의내용

제100차 학교법인 이사회회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강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김영춘 이사장을 비롯한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이날 이사회에서 김영춘 이사장은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였다. 그리고 위 4번의 ①보고사항을 마치고 본 회의 의안인 위 5번의 심의안건을 다룬 후 위 4번의 ②와 ③의 보고사항을 접수 한 후 회의를 마쳤다.

7. 의결내용

<제1호>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
금강대학교 송희연 총장과 권정만 기획조정팀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17억7,789만원을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과하였다.

<제2호> 2019학년도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
금강대학교 송희연 총장과 권정만 기획조정팀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18억5,031만원을 2019학년도 금강대학교 본예산으로 통과하였다.

<제3호>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(안)

법인사무처 정응화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83억732만원을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과하였다.

<제4호>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본예산(안)

법인사무처 정응화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66억1,028만원을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본예산으로 통과하였다.

방두성	방두성	송희연	송희연	인형무	인성호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<제5호> 금강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(안)

금강대학교 송희연 총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
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통과하였다.

○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자

순번	소속	성명	생년월일	현직위	의결사항		비고
					직위	계약기간	
1	글로벌교양학부	정미애	1966. 12. 5	부교수	부교수	2018. 9. 1 - 2019. 8. 31	

<제6호>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변경(안)

법인사무처 정응화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,
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.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변경(안)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제54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중 사립학교법 제62조(2016.5.29.) 개정 에 따라 ②항을 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’를 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’로 개정하고, ③항~⑤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1.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다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
 - 라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방두성 방두성	송희연 송희연	인행무 인행무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④교원징계위원회는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"외부위원"이라 한다)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⑤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·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

제60조(진상조사 및 의견개진) 중 사립학교법 제65조(2016.5.29.) 개정에 따라 ②항의 '관계인'을 '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'로 개정한다.

제61조(징계의결) 중 사립학교법 제66조 개정(2016.2.3.) 개정에 따라 ③항의 '7일'을 '15일'로 개정한다.

제63조(징계시효)를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(2018.4.17.)개정에 따라 '교원징계의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는 발생한 날로부터 2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3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'를 '교원징계의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, 교육공무원법 제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'로 변경한다.

제63조의 2(징계의 사유 및 종류) 사립학교법 제61조(2016.2.3.) 개정에 따라 '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.'를 신설한다.

제63조의 2(징계의 양정) 사립학교법 제61조(2016.2.3.) 개정에 따라 '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'를 신설한다.

제71조(징계 및 재심청구)를 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 규정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①항의 '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둔다.'를 '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'로 ②항의 '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,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'를 '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,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로 각각 변경하고 ③항 '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.'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(제54조 ②~⑤항, 제60조 ②항, 제61조③항, 제63조, 제63조의 2, 제63조의 3, 제71조①~③항)

-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건

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방두성 이사, 송희연 이사, 인형무 감사를 선임하였다.

방두성	방두성	송희연	송희연	인형무	인형무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